

의안번호	제 57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(유니버시아드)
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30일

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(유니버시아드)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

의안 번호	57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20. 10. 3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」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종합운동경기대회임
- 충청권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빛나는 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」를 공동 유치하여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과 미래성장 동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신수도권 시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으로
-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(대회 유치 승인)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회개요

- 명 칭 :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* 주최 : 국제대학스포츠연맹(FISU)
- 개최시기 : 2027년 7~8월 중(12일간)
- 개최지 : 충청권 4개 시·도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)
- 규모 : 150개국 15,000명(선수단, 임원)
- 대회종목 : 정식 15개, 선택* 3~6개 종목 * FISU와 협의 필요
 - 정식종목 : 기계체조, 육상, 배드민턴, 농구, 다이빙, 펜싱, 유도, 수영, 리듬체조, 탁구, 태권도, 테니스, 배구, 양궁, 수구
 - 선택종목 : 축구, 조정, 골프, 요트, 비치발리볼, e-스포츠

나. 필요성

- 충청권 4개 시도민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 최고조
 - 충청권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全無에 따른 560만 충청인의 소외감 해소
 - '93년 대전세계박람회 이후 37년만의 국제 메가 이벤트를 개최를 통해, 충청권의 경제발전과 스포츠 발전의 기회라는 인식 공유
- 충청권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역량 충분
 - 국제오픈볼링대회, 2018 ITTF 월드투어코리아오픈,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
 -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보다 약 4배 많은 공공체육시설 보유
 - 편리한 도로·철도·항공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대한민국 교통중심지
 - 문화재청이 지정한 백제·중원문화 중심권역으로 문화·관광자원 풍부
- 우정, 페어플레이, 협동심 등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정신 구현
 - 충청권은 70여개 대학교가 밀집한 교육도시로 대회개최의 최적지
 -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이어 대학생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2032 서울-평양 올림픽 유치 및 성공개최의 디딤돌 역할 수행
 -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 역할수행 및 남북 평화·화합 무드 조성
- 국가 브랜드 및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
 - 2014 인천아시안게임,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,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로 국가 브랜드 향상
 -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충청인의 결속력 강화 및 자긍심 고취 계기 마련,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

다. 기대효과

○ 산업·경제적 기대효과

-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달성
- 광역철도,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교통 활성화로 충청권 발전 촉진
- 첨단 정보통신·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
-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대규모 고용 및 경제생산 효과 발생
 - * '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(고용유발효과 3만여명, 생산·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6천억원)
-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 도시로 도약의 전기 마련
 - * 동북아 과학수도(대전), 대한민국 행정수도(세종), 세계 바이오·뷰티산업의 중심(충북), 세계적인 역사·문화·관광거점(충남)

○ 사회·문화적 기대효과

-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던 충청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, 충청권 결집
- 지역 간 화합·통합모델로서,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정신 구현

○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 분위기 정착에 기여

- 2032 서울-평양올림픽과 연계,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
-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장 마련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, 세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

3. 관련법령

【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】

제6조(대회 유치 승인) ①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(경기단체를 포함한다)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등"이라 한다)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